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찾기 위해 즉시 서로 협의한다.
3.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정되고 양 당사국에 의해 수락된 경우,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에 자동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의무의 범위

각 당사국은 그 영역 내에서 각각의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의한 이

협정상 모든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 1.4 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반덤핑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농업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이란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체결된 생물 다양성협약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폐루에 대해서는, 국가정부, 그리고
-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적용대상투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에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령의 운영 및 집행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협정 제5조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 또는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日)이란 달력상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 기업, 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지 그리고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준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해 그리고 류의 주해를 말한다.

호란 HS상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2.1조(공동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폐루에 대해서는, 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 나. 폐루에 대해서는, 폐루 정치헌법 제52조 및 제53조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출생, 귀화 또는 선택에 의해 폐루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폐루 영주권자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상 수립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人)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폐루에 대해서는, 폐루 정치헌법 및 그 밖의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지역정부, 그리고
-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지역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정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소호란 HS에 따른 관세분류번호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영역¹⁾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폐루에 대해서는, 폐루가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영역, 도서, 해양수역 및 그 위의 상공, 그리고
-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 지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협정에 포함된 “영역” 정의 및 “영역”에 대한 언급은 오로지 이 협정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을 말한다.